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손윤목

#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- 법체계와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사용료의 징수·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한 준용규정 삭제(안 제10조)

## 4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사용료의 징수·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」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조례에서 하위 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